

=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=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. 10. 8 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8. 10. 9

다. 상 정 일 자 : 제163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(2008.10.28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박노선 기획감사실장)

가. 제안이유

-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도시경관과
관련있는 총무국 소관 광고물 관리업무를 도시국으로 이관함에 따라
그와 관련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총무국 분장 사무중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(안 제5조 제2항 제14호)
- 도시국 분장 사무에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7조 제2항 제17호)

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
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 기준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본 조례 개정안은

도시경관과 관련있는 광고물 관리업무를 도시디자인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 조정하려는 것으로

나. 적법성 부분은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 ②항에 보면 「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」 라고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,
- 또한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④항에 「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」 라고 명시하고 있음.

다.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

관련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되어 있으며 또한 조직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도움될 것으로 판단되어 짐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6. 토 론 요 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